#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80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김예지·박덕흠·엄태영

임종득 · 김소희 · 백종헌

김선교 • 최수진 • 서명옥

인요한 • 고동진 • 이주영

장동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 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 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 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성 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 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65조, 제66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 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항제2호·제2호의2에"를 "제1항제2호에"로,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를 "제8조제4호·제5호나목에"로, "제8조제4호에"를 각각 "제8조제5호가목에"로,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해당하면"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이 법 시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관한 개정 부분만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8조(결격사유 등)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 료인이 될 수 없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 조. 제234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 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법」, 「지역보건법」, 「후천 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 「응 급의료에 관한 법률 , 「농 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 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 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 지 아니한 자
-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면허를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의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u>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u>아니하다.
- 2. (생략)
-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

   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 3. ~ 8. (생략)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 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

<b>\</b> 4 /1/	<삭	제>
----------------	----	----

∄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1
1			
	<	(단서 삭)	제>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 8. (현행과 같음)

2 -----

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	
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된 날부터 1년 이내, <u>제1항제2</u>	제1항제
호·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u> 2호에</u>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	
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	
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	<u>제8조제4호ㆍ제5호나목에</u>
<u>터 제6호까지에</u>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	- <u>제8조제5호가목에</u>
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	
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u>제8조제5호가목에</u>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	
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	<u>5년</u>
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	
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면(제65</u>	<u>해당하면</u>
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	

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 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 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 어 결정할 수 있다.

1. ~ 10. (생략)

② ~ ⑥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